
I. 서론

1. 연구배경

가.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인식의 제고

이 연구는 금융감독에 있어 두 가지 큰 흐름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첫째는 국내 금융감독에 있어서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 감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제적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대형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이에 대한 대응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금융그룹별 감독시스템」 추진방안”¹⁾을 발표하였다. 이는 사실상 금융지주그룹과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등으로 복합금융그룹 범위를 정의하고 그룹단위 건전성 감독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과 함께 장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체계를 금융권역별 체계에서 금융그룹별로 전환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행 개별회사단위 감독에 더해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 감독을 도입하여 미시적 감독을 보완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인 경우 강화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형 금융그룹의 실패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어 실물경제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이에 G20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 이들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권한을 주어 현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시스템적으

1) 금융위원회(2015. 1. 29), 「2015년 업무계획」, p. 70.

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SIFIs)를 식별하여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G-SIFIs)의 지정 및 규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각국의 금융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지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회사(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D-SIFIs)에 대한 지정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대형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 감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안정성 측면의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그룹단위 감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국내외 금융규제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감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논의는 복합금융그룹의 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맞춘다. 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또는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건전성(Micro-prudential) 감독과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또는 금융그룹의 부실화 또는 실패의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소비자(예금자, 보험계약자,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은행권의 바젤 III 규제, 보험권의 Solvency 또는 RBC 규제, 금융투자권역의 순자본규제(Net Capital Rule) 등에 기초한 금융감독은 각 금융권역의 대표적 미시건전성 감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에서의 보완적 감독도 금융그룹의 부실을 모니터링하는 미시건전성 감독으로 볼 수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이 부실화되거나 실패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 또는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거나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 등에 대하여 강

화된 감독과 함께 시스템적 중요성에 비례한 추가적인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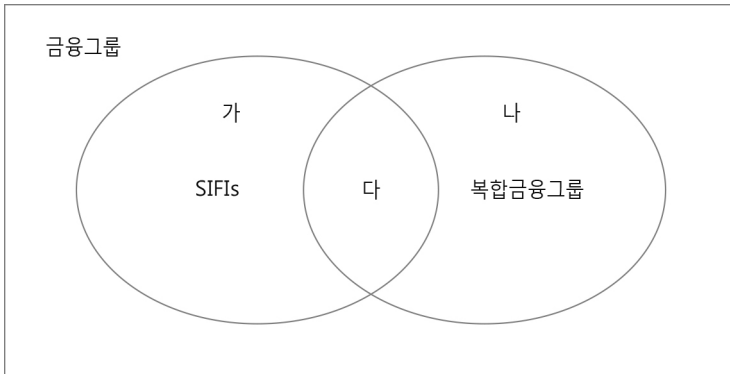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의 복합금융그룹 감독은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과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이 최근 들어 동시에 화두로 떠오르며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 감독의 맥락에서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보완적 감독인 미시건전성과 강화된 감독인 거시건전성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제1부는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로 제2장과 제3장에서 다룬다. 제2장에서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개관하고 미국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그룹(SIFI) 규제를 참고하여 제3장에서 거시건전성 감독 측면에서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해 본다. 제1부를 통해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복합금융그룹은 사업 모형에 따른 시스템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 감독은 미시건전성 측면에서 보완적 감독이 보다 중요하며 제2부에서 이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2부는 「복합금융그룹 선정 및 감독방안」으로 제4장과 제5장에서 다룬다. 제4장에서 미시건전성 감독 측면에서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감독에 대해 개관하고 EU의 복합금융그룹 감독을 참고한다. 제5장에서 우리나라 비은행 복합그룹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그룹감독을 위한 금융그룹 선정 및 보완적 감독방안을 제시한다. 제2부를 통해 우리나라 복합금융그룹의 형태 및 금융그룹의 보완적 감독을 주제로 복합금융그룹 선정방안과 이들에 대한 보완적 감독방안을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금융그룹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인 보완적 감독은 국제 감독기준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그룹감독의 도입을 업무계획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독자들이 제2부의 내용만을 독립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보완적 감독방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그림 I-1〉 SIFI 규제와 복합금융그룹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개념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I-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전체 금융그룹 중 어떤 금융그룹은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지는데(좌측 타원) 이들은 복합금융그룹으로 분류될 수도(다 영역) 아닐 수도(가 영역) 있다. 또한 복합금융그룹(우측 타원)이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질 수도(다 영역) 아닐 수도(나 영역) 있다. 교집합에 속하는 금융그룹(다 영역), 즉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진 복합금융그룹은 두 가지 규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복합금융그룹이 시스템적 중요성을 갖지 않는 경우(나 영역)에는 보완적 규제만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조직 상 특성은 이들이 이른바 재벌로 불리는 산업자본 성격을 가진 대기업집단의 일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주로 경제력집중의 완화 또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논의는 보험회사를 포함하고 있는 비은행 금융그룹의 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맞추므로 금산분리로 불리는 산업자본의 금융업 지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경제력집중의 관점이 아니라 한 부분의 부실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는 리스크의 전이

측면에서 접근한다. 따라서 금산분리를 포함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반적 경제력집중 규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논의 대상이 아님을 미리 일러둔다.

2. 선행연구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Billio, Getmansky, Lo and Pelizzon(2010)와 Cummins and Weiss(2014)를 우선 들 수 있다.

Billio, Getmansky, Lo and Pelizzon(2010)은 보험·금융부문의 시장수익에 기반한 시스템리스크의 다섯가지 측정기준을 제시하고 금융부문 간 상호연계성에 따라 시스템리스크가 증대하였음을 보였으며, Cummins and Weiss(2014)는 보험회사 사업모형의 시스템리스크 관련성을 고찰하고, 전통적인 보험사업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지만 보험그룹에 대한 그룹단위감독 강화를 통해 비전통 보험업의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복합금융그룹 리스크에 관한 선행연구인 이민환·전선애·최원(2009)은 해외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자기자본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복합금융그룹 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복합금융그룹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아닌 미시건전성 측면의 리스크 및 자기자본규제 관련 연구이며 시스템리스크 관련 논의는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임준환·유진아·이경아(2012)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성을 반영한 보험규제의 변화 내용과 그 내용이 우리나라 보험감독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그룹에 대한 그룹감독과 관련된 논의는 다루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그룹을 중심으로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 감독을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측면 모두 고찰하였다. 금융그룹의 사업모형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성을 검토하고 그룹단위에서 보완적 감독의 대상이 되는 비은행 금융그룹의 선정방안을 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맞춤형 감독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감독방안을 모색해 본다.